[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 전 1,983.48㎡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8㎡에 대하여 1995. 1.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대지는 원래 ○○ ○○군 ○○읍 ○○리 ○○○ 전 1,983.48㎡ 중 일부이었는데, 소외 김◉◉가 ○○지방법원 ○○등기소 1966. 7. 31. 접수 제○○○○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그 뒤 소외 이◉◉, 박◉◉, 최◉◉ 등이 위김◉◉로부터 공유지분 일부를 각 매입해서 분할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이를 점유하던 중 1974. 7. 12. 소외 ○○조합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외 ○○조합이 소유 및 점유하다가, 1975. 1. 14. 원고가 이를 최종적으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습니다.

-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분할 건물 이 전 1,983.48㎡에 관한 위 등기소 1963. 5. 18. 접수 제 ○ ○ 호 피소 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가 ○ 지방법원 ○ 가단 ○ 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하였으나 선등기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패소하고 뒤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3. 그러나 원고에 앞선 위 점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점유를 시작한 1975. 1. 14.부터 20년이 되는 1995. 1. 14.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1. 갑 제2호증

1. 갑 제3호증의 1

1. 갑 제3호증의 2

1. 갑 제4호증

1. 갑 제5호증

1. 갑 제6호증의 1, 2

각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구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재산세(토지)영수증

각 판결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소장부본

1. 송달료납부서

각 1통

1통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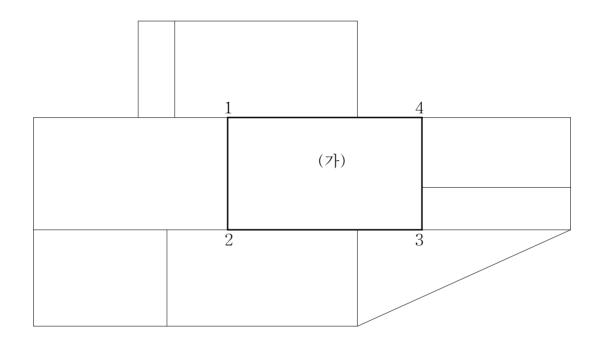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도 면 (○○ ○○군 ○○급 ○○리 ○○○ 전 1,983.48㎡)



관 할 법 원	소멸시효 ○○년(□조멸시효일람표) ※ 아래(1)참조 기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ㅇㅇㅇ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u>및</u>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전소(前訴)의 소송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後訴)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 전후의 양 소는 그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 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公有)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 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 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 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
	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 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 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 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 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 32175 판결, 1976. 11. 6.선고 76다148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 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 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 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 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